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년 7월 1일

나. 제 안 자: 김민석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2022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2.7.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민석 의원)

❑ 제안이유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청년문화예술사업의 위탁가능함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청년문화예술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청년문화예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2) 「청년기본법」 제2조~제4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 제5조

나. 협조부서: 문화체육과

다. 입법예고(2022. 7. 8. ~ 7. 13.) 결과: **의견 있음(붙임 참고)**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제정 취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18조(청년문화의 활성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검토 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과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예고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키고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신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는 우리 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조례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청년의 연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다만, 안 제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5조[1]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아닌 시행계획**이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② (생략)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안 제6조제10호의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은 ‘안 제7조(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조문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이 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6조 수정의견>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 ----------
1. ~ 9. (생 략)	1. ~ 9. (원안과 같음)
10.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삭 제>
11. (생 략)	10. (원안 제11호와 같음)

○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제5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 위탁이 가능함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청년 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5호 라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또한, 우리 구는 마곡지구 개발로 거주자의 약 31.8%가 2~30대 청년 인구(2022년 06월 기준 행전안전부 주민등록현황)로 청년층의 유입이 늘고 있고 청년 예술인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청년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이 조례 시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비중(일반회계 대비 60.18%)이 높은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소관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키고 강서구민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비함
- ❍ 조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어순을 정비하고, 중복된 부분을 삭제함

나. 수정내용

- ❍ 제2조제1호 중 “18세”를 “만 19세”로, “거주하는”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으로 한다.
- ❍ 제5조제1항 중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를 “구청장은”으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를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으로 한다.
- ❍ 제6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1. -------- 만 19세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 2. (원안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② (원안과 같음)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강서구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 11. (생 략)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 1. ~ 9. (원안과 같음) <삭 제> 10. (원안 제11호와 같음)

참고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1.5.6.)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강서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 문화체육과

의원발의 조례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2조 및** 제5조	- 청년의 정의 및 문화에 관련한 정책, 단체 활동, 시설 등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규정한 제2조를 참고사항 조항에 추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 청년지원 정책 범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정의 나이인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례안 수정 필요 - 강서구민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을 명기 필요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청년...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보조사 추가